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 및 구직촉진수당 인상 〉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52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 및 구직촉진수당 인상	3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2일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인 1년보다 길게 나타남.

아울러 늘어난 구직기간 동안에 청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결정하던 구직촉진수당에 최소 지급액 기준을 새로이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이에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

진수당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구직자가 사회경제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 및 구직촉진수당 인상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월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①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u>1년</u> 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① ----- ----- ----- ----- ----- ----- ----- ~~2년~~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생략)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 (月) 단위로 <u>정한다</u> .	② ----- ----- <u>정하되,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 단위로 정한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으</u>

③ (생 략)	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여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취업지원 신청 당시 15세 이상 69세 이하이면서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8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는 소득무관)이어야 함.¹⁾

1)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자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됨. 수급자격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게 됨.²⁾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³⁾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갖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별표1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별표1에서 정하는 사람: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주민, 여성가家主,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맞춤특기병,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청년,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고용 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실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영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

** 별표1에서 정한 사람 중 청년(18~34세)은 소득에 상관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가능

2)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게 됨.

3)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추는 것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 ④ (생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억원을 말한다. 다만, 15세 이상 34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추고,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5~34세 청년은 120% 이하)이며,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총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어야 함(15~34세 청년은 취업한 사실이 없어도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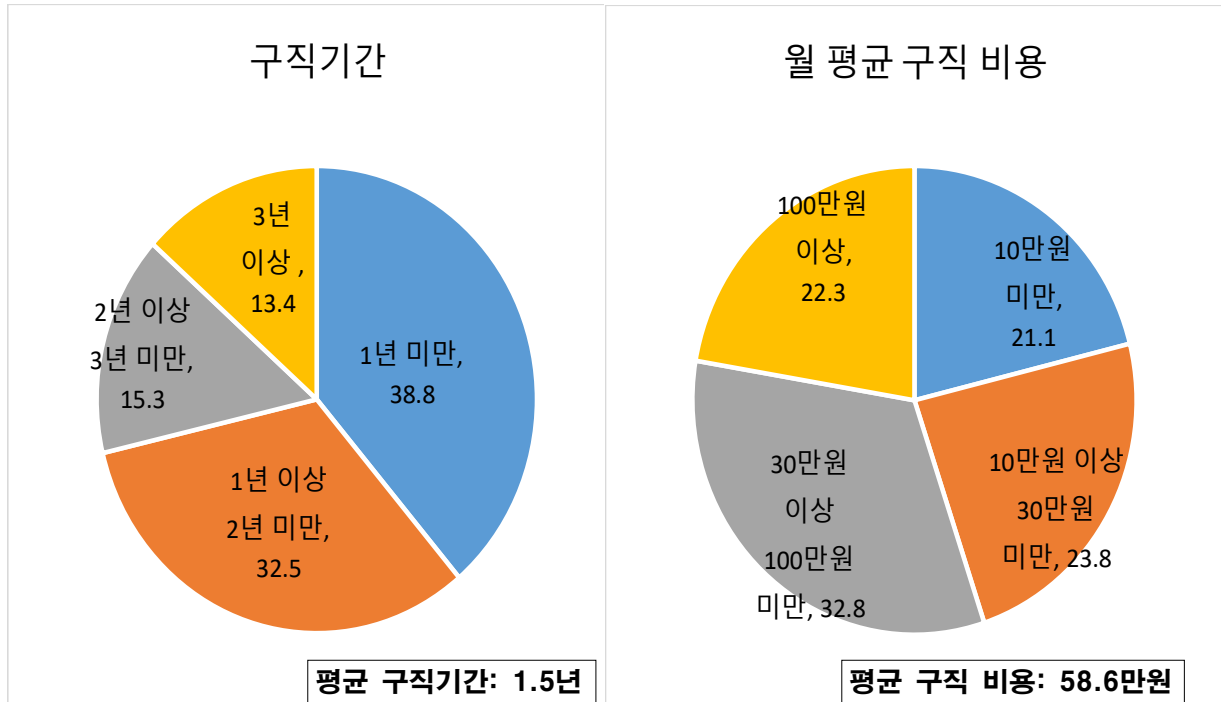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는데, 2024년 기준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은 월 50만원이고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2023년부터 월 50만원 이외에 부양가족 1명당 10만원(최대 40만원)의 가족수당⁴⁾이 추가로 지급됨.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 월 평균 구직 비용은 5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현행 국민취업지원서비스 기간과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4) 중증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가구원 1명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그림] 청년구직자의 구직기간 및 월 평균 구직 비용

(단위: %)



※ 1) 주: 청년(20세 이상 34세 미만)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함

2)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를 재편집

이에 개정안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 단위로 정한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⁵⁾

개정안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연장과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 구직자의 생계안정을 더욱 강화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노동시장 진입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5)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이고,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므로(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개정안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최소 지급액은 월 824,296원이 됨.

특히, 2023년 기준 20세 이상 34세 이하 수급자격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건수는 792,292건에 달하는바, 구직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년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021~2023년 구직촉진수당 지급실적

(단위: 건수, 백만원)

연도	연령	지급건수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수당 추가지급액*
2023	합 계	1,111,897	551,356	29,396
	19세 이하	28,088	13,846	1,288
	20세 이상 34세 이하	792,292	392,764	12,690
	35세 이상 69세 이하	291,517	144,746	15,418
2022	합 계	1,170,966	580,989	
	19세 이하	22,237	10,945	
	20세 이상 34세 이하	798,073	395,869	
	35세 이상 69세 이하	350,656	174,175	
2021	합 계	1,418,498	705,332	
	19세 이하	20,253	9,991	
	20세 이상 34세 이하	843,322	419,172	
	35세 이상 69세 이하	554,923	276,169	

※ 1) '23.1월부터 부양가족수당 추가지급 신설

2)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현행법상 1년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⁶⁾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

6)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①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⁷⁾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관계부처	의 건
고용노동부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확대: 현행 법령상으로도 기간 연장, 사후관리기간 등을 포함하여 최대 22개월*까지 참여 가능하고, 참여자의 평균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은 약 8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 필요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1년 + 연장 6개월 + 사후관리 3개월 + 사후관리 연장 1개월 ** 평균 취업지원서비스기간: '22종료자 256일, '23종료자 246일 2) 구직촉진수당을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으로 지급: 노동시장 밖 취업취약계층의 구직의욕 및 역량을 북돋아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과 구직촉진수당을 연동하는 것은 신중 검토 필요
기획재정부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확대: 지원 기간 연장의 효과성 및 노동시장 복귀 유인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중 검토

③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및 연장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종료되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능력, 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7)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직촉진수당을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으로 지급: 구직촉진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업부조의 성격이 강하므로 생계비 수준, 재원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	--

문 의 처
02)6788-5538